

먼저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와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그리고 한국DAO법연구회가 주최하는 공동학술대회에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장선미 박사님께서 발제하신 주제에 관하여 문외한인 제가 과연 토론을 할 자격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DAO의 기본권 주체성과 관련하여 발제를 하신 장선미 박사님께서는 발표자료 9쪽에서 “DAO의 법적 지위를 기존 법제의 유사한 개념(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 조합, 상사회사 등)에서 찾을 것인지 DAO 자체를 하나의 법적 지위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만약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DAO와 그 구성원들은 “합명회사(a general partnership)” 즉, 각각의 구성원들이 DAO의 행위에 대해 연대책임(jointly and severally)을 지게 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²⁾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사람이 사업의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고 부채도 공동으로 부담하는 형태이므로, DAO의 어느 한 구성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DAO가 야기한 손해에 대해 DAO의 구성원 전원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³⁾ 따라서 발제자이신 장선미 박사님은 우리나라의 현행 법의 테두리 내에서 DAO의 법적 성격을 “기존 법제의 유사한 개념(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 조합, 상사회사 등)” 중 어떤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의 와이오밍주는 DAO가 유한책임회사(LL.C.)의 형태로 설립되는 것을 허용하고, DAOs를 “탈중앙화자율조직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정관(articles of organization)을 갖고 있는 유한책임회사(a limited liability company)”로 정의하는 법률⁴⁾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⁵⁾ 그렇다면

1) 경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Ph.D., S.J.D.)

2) Ali Dhanani & Brian J. Hausman,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 34 No. 5 Intell. Prop. & Tech. L.J. 3, 5 (2022); Aaron Wright, The Rise of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4 Stan. J. Blockchain L. & Pol'y 152, 167 (2021).

3) Dhanani & Hausman, 위의 논문, 5쪽.

4) WYO. STAT. ANN. § 17-31-104(c) (2021). “(a) A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is a limited liability company whose articles of organization contain a statement that the company is a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as described in subsection (c) of this section. (b) A limited liability company formed under the Wyoming Limited Liability Company Act, W.S. 17-29-101 through 17-29-1102, may convert to a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by amending its articles of organization to include the statement required by subsections (a) and (c) of this section and W.S. 17-31-106. (c) A statement in substantially the following form shall appear conspicuously in the articles of organization or operating agreement, if applicable, in a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

5) Pierluigi Matera, Delaware’s Dominance, Wyoming’s Dare: New Challenge, Same Outcome?, 27 Fordham J. Corp. & Fin. L. 73, 130 (2022); O’Melveny, DAOs: Looking for Limited Liability & Legal Personality, July 11, 2022, <https://www.omm.com/resources/alerts-and-publications/alerts/daos-looking-for-limited-li>

우리도 미국의 예를 참조하여 DAO가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설립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모든 DAO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DAO가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설립되는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장박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 DAO가 스스로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DAO의 구성원이 사인으로서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 기본권 보장에 보다 더 충실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발제자이신 장선미 박사님께서서는 15쪽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전제로 하는 DAO 자체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기본권 보장의 부재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공법과 사법의 구분이 명확하고 기본권이 사인간에도 직접 효력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연 DAO에게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필요성이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기존의 사법(私法)을 통한 규율 또는 개별법의 규율로도 충분히 DAO를 규율할 수 있다면 DAO의 기본권 주체성 내지 기본권 침해의 문제는 그다지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는 견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박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